

對北支援事業에 대한 稅制支援方案

1999. 12

研究者：崔星根(研究委員)

한국법제연구원

目 次

| | |
|---|----|
| 第 1 章 對北支援事業과 관련한 租稅負擔의 緩和 또는 解消의 必要性 | 5 |
| 第 2 章 寄附金에 대한 法人稅法 및 所得稅法上의 取扱 | 7 |
| 1. 法人稅法上의 寄附金에 대한 取扱 | 7 |
| (1) 法人稅制 一般 | 7 |
| (2) 法人稅法上 寄附金의 種類 및 認定範圍 | 10 |
| 2. 所得稅法上의 寄附金에 대한 取扱 | 12 |
| (1) 所得稅制 一般 | 12 |
| (2) 所得稅法上 寄附金의 種類 및 認定範圍 | 14 |
| 第 3 章 財貨·用役의 買入·供給에 대한 附加價値稅法上의 取扱 | 17 |
| 1. 附加價値稅制 一般 | 17 |
| (1) 附加價値稅의 意義 | 17 |
| (2) 納稅義務者 | 17 |
| (3) 課稅對象去來 | 19 |
| (4) 稅額의 計算 | 21 |
| 2. 免稅制度와 零稅率制度 | 21 |
| (1) 免稅制度 | 21 |
| (2) 零稅率制度 | 23 |
| 第 4 章 結論 및 政策的 提言 | 25 |
| 1. 民間對北團體에 支出하는 寄附金에 대한 稅制上 惠澤의 附與方案 | 25 |

| | |
|---|----|
| (1) 寄附金 誘引動機로서의 稅制上の 惠澤 | 25 |
| (2) 民間對北團體에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한 現行租稅法上的 取扱 | 25 |
| (3) 考慮事項 | 26 |
| (4) 改善方案 | 26 |
| 2. 對北支援物品 買入·供給과 관련한 節稅方案 | 27 |
| (1) 節稅方案으로서 附加價値稅 零稅率制度의 活用 | 27 |
| (2) 對北支援物品의 買入·供給에 대한 現行租稅法上的 取扱 | 27 |
| (3) 考慮事項 | 27 |
| (4) 改善方案 | 28 |

〈關係法令〉

| | |
|----------------------------------|----|
| 1. 對北支援事業關聯 寄附金 關係法令 | 29 |
| 2. 對北支援事業關聯 附加價値稅 零稅率 關係法令 | 42 |

第1章 對北支援事業과 관련한 租稅負擔의 緩和 또는 解消의 必要性

이 보고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대북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의 재원확충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민간대북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계와 그 기부금으로 지원물품을 매입하여 북한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단계에서 기부자 또는 민간대북단체의 조세부담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북지원사업이고, 이러한 대북지원사업은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으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이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은 주로 민간대북단체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이들 민간대북단체는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종래에는 민간대북창구가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되어 있어 여타의 민간대북단체들은 기부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1999년 2월 10부터는 대북지원절차의 간소화·자기명의에 의한 직접 지원 및 소량의 적기 지원을 가능케 한다는 취지에서 복수의 독자지원창구가 허용됨에 따라, 민간대북단체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지원물품을 매입하여 북한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민간대북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의 재원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 효과적인 지원방안의 하나로 법인 또는 개인이 민간대북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제상의 유인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아울러 민간대북단체가 기부금으로 지원물품을 구입하여 북한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단계에서 절세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면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확충에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기부금의 지출 및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조세법상의 취급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터잡아 민간대북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민간대북단체의 대북지원물품의 매입·공급과 관련한 절세방안을 제시한다.

第2章 寄附金에 대한 法人稅法 및 所得稅法上的 取扱

1. 法人稅法上的 寄附金에 대한 取扱

법인이 민간대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계산과정에서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공제의 인정여부와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계산을 포함하여 법인세제 일반을 개관하고, 법인세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기부금에 대한 취급에 관하여 살펴본다.

(1) 法人稅制 一般

1) 法人稅의 意義·納稅義務者 및 課稅對象所得

- ①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1사업년도(통상 1.1~12.31) 기간동안의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직접세를 말한다. 법인세목적상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또는 단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인정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참조). 법인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국 여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뉘고, 사업목적이 영리인가 비영리인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 ② 내국법인은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무제한납세의무자)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제한적납세의무자). 영리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청산소득 및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 즉,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2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各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稅額計算

익금총액 - 손금총액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기납부세액) = 신고·납부세액

① 소득금액(제14조)

소득금액 = 익금총액 - 손금총액

i. 계산구조

- (i) 형식적 계산구조 : 익금총액 - 손금총액
- (ii) 실제의 계산내역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 (iii) 실제의 계산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에 의하여 산출된 당기순이익에 일정한 세무조정을 가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 (iv) 당기순이익이란 기업회계에 의하여 수익에서 손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ii.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 (i) 익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자본 또는 출자의 유입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실제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상의 익금항목 그 자체가 익금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당기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항목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세무조정시 이를 다시 가산할 필요가 없다.
- (ii) 손금이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고,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과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실제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상의 손금항목 그 자체가 손금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당기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항목을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세무조정시 이를 다시 가산할 필요가 없다.

(iii)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조세목적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을 말하고, 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상 손비이지만 조세목적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20조 내지 제28조)을 말한다.

②과세표준(제13조)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i.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년도 이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의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년도에 공제되지 못하고 당해 사업년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 ii.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비과세소득으로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이 있고,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는 몇가지 비과세소득이 있다.
- iii. 소득공제에 관하여 법인세법에는 관련규정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 해외사업소득공제 등이 인정된다.

③세율(제22조) - 2단계 초과누진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i. 과세표준 1억원이하 100분의 16
- ii. 과세표준 1억원 초과 100분의 28

④세액공제·세액감면 및 기납부세액

신고·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기납부세액)

- i.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가 있다.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는 몇가지 세액공제가 있다.
- ii. 세액감면에 관하여 법인세법에는 관련규정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소정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인정된다.

- iii. 기납부세액이란 당해 사업년도 기간중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간에 납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말한다.

(2) 法人稅法上 寄附金の 種類 및 認定範圍

1)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의의 및 종류

- ① 기부금이란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의 지출은 순자산감소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기업활동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본래 의미의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조세법은 어느 정도의 기부행위는 독립적 인격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불가피하고 사회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금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② 기부란 통상 재산의 출연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조세법상의 기부금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넓어 증여도 포함된다. 이 때 증여란 증여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면책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변제, 현저한 저가양도 및 고가매입 등 경제적 이익의 공여를 포함한다.
- ③ 기부금은 일정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그리고 공익성이 없는 경우로서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법인세법 제24조 참조).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이 기부금으로 의제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참조).
- ④ 기부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현금주의에 의한다. 예컨대 1998년 12월 10일에 약속어음으로 기부하고 1999년 6월 10일에 결제되었다면 손금산입시기는 현금주의에 따라 어음결제일이 속하는 1999사업년도이다. 또한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때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장부가액으로,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2) 종류별 손금산입한도액

①법정기부금

i. 의 의

법정기부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홀병금 및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4조제2항).

ii.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법정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기부금 지출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인정된다(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 (당기순이익+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법정기부금 지출액 + 지정기부금 지출액 - 이월결손금

②지정기부금

i. 의 의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 공익성 기부금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ii.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지출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된다(법인세법 제24조제1항). 실무상으로는 법정기부금 시부인후에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므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5%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5/100

③의제기부금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하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하는 경우에는 정

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으로 의제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하거나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하였다면 의제법정기부금이 되고, 공익단체 등에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하거나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하였다면 의제지정기부금이 된다.

2. 所得稅法上的 寄附金에 대한 取扱

개인이 민간대부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액계산과정에서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그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의 인정여부와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액계산을 포함하여 소득세제 일반을 개관하고, 소득세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기부금에 대한 취급에 관하여 살펴본다.

(1) 所得稅制 一般

1) 소득세의 의의·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소득

- ①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1과세년도(1.1~12.31) 기간동안의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직접세이다.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뉜다.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무제한납세의무자) 비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제한적납세의무자). 그리고 소득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과 별개로 독립적인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참조).
- ②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9가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이들 9가지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 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중 1인에게 집중되는 단기간(1과세년도)의 발생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 소득 및 일시재산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장기간에 걸친 누적소득인 양도

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은 분류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소득 중 일부 소득 즉,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기타 소득의 대부분은 과세·징수의 편의상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하고 있다(제15조).

2)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액계산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text{소득금액}$$

$$\text{소득금액} - (\text{소득공제} + \text{비과세소득}) = \text{과세표준}$$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산출세액}$$

$$\text{산출세액} - (\text{세액공제} + \text{세액감면} - \text{기납부세액}) = \text{납부세액}$$

① 소득금액

$$\text{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i. 총수입금액이란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 소득을 제외한 6가지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 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ii.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에 인정된다. 이 중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수입금액의 75%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② 과세표준

$$\text{과세표준} = \text{소득금액} - (\text{소득공제} + \text{비과세소득})$$

i. 소득공제

소득세법은 기초적인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인정되는 몇가지 소득공제가 있다.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기타 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第2章 寄附金에 대한 法人稅法 및 所得稅法上的 取扱

- (i)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 (ii) 추가공제 : 부양가족 중 65세이상 1인당 50만원의 경로우대추가공제 및 기본공제대상이 본인 또는 본인 포함 2인이하인 경우 100만원과 50만원의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인정
- (iii) 특별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생존배려차원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공제 인정

ii. 비과세소득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대상소득별로 비과세소득을 인정하고 있고,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는 몇가지 비과세소득이 있다.

③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i. 과세표준 1,000만원이하 100분의 10
- ii. 과세표준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00분의 20
- iii. 과세표준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100분의 30
- iv. 과세표준 8,000만원초과 100분의 40

④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기납부세액

- i.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세액공제에는 외국납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의 4가지가 있다.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는 몇가지 세액공제가 있다.
- ii.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소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주고 있고,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는 몇가지 세액감면이 있다.
- iii. 기납부세액이란 당해 과세연도 기간중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말한다

(2) 所得稅法上 寄附金の 種類 및 認定範圍

- ① 기부금은 소득의 발생과는 무관한 지출이지만, 법인세에서와 동일한 취

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 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기부금의 인정여부와 인정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을 원용하고 있다.

-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관련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사항 및 한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의 경우와 같다(소득세법 제34조, 제35조 등 참조). 또한 근로소득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한도없이 전액, 지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35조).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기부금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第3章 財貨·用役의 買入·供給에 대한 附加價値稅法上의 取扱

1. 附加價値稅制 一般

(1) 附加價値稅의 意義

- ① 부가가치세란 사업자와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유통단계별 부가가치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여기에서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되는 가치를 말하는데, 이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출되고 그 결과는 노임과 이윤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 ②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로서, 다음유통단계에서 소비가 불가능하면 부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이 대표적인 예인데, 수출재화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2) 納稅義務者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이다(제2조).

1) 사업자의 판단

① 사업성

- i. 사업성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시적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ii. 사업자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의 여부나 명의 또는 공급하는 재화의 소유권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② 독립성

- i. 재화와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공급주체가 법률적으로 타인에게 종속됨이 없이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다른 기업의 연장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ii. 독립성이 없는 다른 사업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납세의무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영세율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2)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인 까닭에 납세의무자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요구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세액의 계산에 있어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들이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부가가치세제의 시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 가능). 이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불공제 등을 불이익을 받는다.

3) 사업자의 분류

-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구분된다. 법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공급대가가 1억 5,000만원에 미달하는 자로서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또한 연간 총공급대가가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 그 외에 광업·제조업·도매업·특별소비세과세대상유흥업·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및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이외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취급된다.

- ②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액의 계산, 세금계산서의 수수, 과세표준·세액의 신고·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4) 재화·용역의 수입과 납세의무자

- ①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이 경우 수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의무자는 해당 세관장이다(제23조제3항).
- ② 용역의 수입은 법문상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제34조(대리납부)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용역의 수입에 준용하면 용역을 수입하는 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자를 대리하여 자신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3) 課稅對象去來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①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제1조제1항 내지 제3항).
- ②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

함되는 것으로 보며 독립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제1조제4항 및 동령 제3조).

③ 공 급(제6조 및 제7조)

i.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i)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ii)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iii)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iv) 구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ii.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iii. 공급의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다. 자가공급, 개인적 목적 또는 사업상 증여 및 폐업공급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 재화의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 포함)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울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제8조 본문).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8조 단서).

(4) 稅額의 計算

1) 계산구조

$$(\text{매출액} \times \text{세율}) - (\text{매입액} \times \text{세율}) = \text{납부세액}$$

부가가치세는 단계별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시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2) 세율(제14조) - 10%의 고정세율

3)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①간이과세자

$$\text{납부세액} = \text{공급대가} \times \text{업종별부가가치율} \times \text{세율}(10\%)$$

②과세특례자

$$\text{납부세액} = \text{공급대가} \times \text{세율}(2\% \text{ 또는 } 3.5\%)$$

2. 免稅制度와 零稅率制度

(1) 免稅制度

1) 의 의

면세제도란 생필품에 대한 역진성 완화, 사회적 기여도, 행정집행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필수품, 의료, 보건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제12조 참조). 이

러한 면세제도는 해당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만을 면제하고 매입세액의 공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면세제도라는 점에서 후술하는 완전면세제도인 영세율제도와 차이가 있다.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도 면제받는다.

2) 효 과

①최종유통단계

실질적으로 조세부담경감을 경감시켜 간접세의 단점인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②중간유통단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이들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를 더하여 다시 공급하면 공제할 매입세액은 없고 매출세액만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납부세액이 매출세액과 동일하게 된다. 즉, 당해 사업자는 자기 사업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당해 사업자는 전단계의 면세에 대한 조세부담까지 부담하게 되어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단계의 면세로 일실한 세수를 다음 단계에서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면세전의 각 유통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기회가 면세에 의하여 사라지게 되므로 그 범위내에서 중복효과가 있다.

3) 면세의 포기

- ① 면세제도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상의 우대조치라기보다는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유통단계에서의 면세는 환수효과 내지는 중복효과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시정하고 싶은 사업자를 위하여 '면세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② 면세의 포기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하면 되고 과세권자의 승인·확인 필요없다. 다만, 면세포기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학술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만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의 포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가 부활한다. 즉, 면세를 포기하면 일단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므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사업자로서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일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을 수 없다.

(2) 零稅率制度

1) 의 의

- ①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영(0)세율의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제11조 참조). 이는 전단계의 거래에서 부담한 모든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해주는 완전면세제도이다. 이러한 영세율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로 수출재화에 대하여,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 그 나라가 부과한 간접세액을 면제·환급해 주는 수출지원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② 본래 수출재화나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수출지원책이라는 의미에 앞서 소비세에 관한 일반원칙인 소비지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에 충실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는 소비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수출재화의 경우는 수출국에서 소비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모순이기 때문이다.

2) 적용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

영세율은 수출재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기타 외화획득장려나 수출산업지원차원 인정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된다(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3)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므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자는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의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第4章 結論 및 政策的 提言

1. 民間對北團體에 支出하는 寄附金에 대한 稅制上 惠澤의 附與方案

(1) 寄附金 誘引動機로서의 稅制上の 惠澤

- ① 조세법은 기부금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정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민간대북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표적인 공익사업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사용되므로 당연히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기부자에게 상당한 유인동기로 작용하므로 그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따라 모집되는 기부금의 총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②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민간대북단체로서는 기부금이 조세법상 어떠한 취급을 받느냐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민간대북단체가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북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원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부여는 기부자의 유인동기를 제고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民間對北團體에 支出하는 寄附金에 대한 現行租稅法上の 取扱

법인 또는 개인이 민간대북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현행조세법상의 취급을 보면,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일부 민간대북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만이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4조, 동시행령 제36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특별공제(소득세법 제34조, 제52조, 동시행령 제80조, 제113조, 동시행규칙 제43조 및 제58조)가 인정되고 있다.

(3) 考慮事項

세제상의 혜택이 적용되는 기부금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민간대북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현재의 지정기부금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법정기부금 수준으로 상향할 것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대북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은 현행조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들(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참조)과의 균형상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부금의 종류는 종래대로 지정기부금을 유지하면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성있는 개선방안이라고 판단된다.

(4) 改善方案

1) 현행조세법하에서 가능한 방안

현행조세법하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민간대북단체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현행법령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실무적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인 즉,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즉, 법인이 아닌 경우는 배제된다는 단점이 있다.

2) 입법조치를 요하는 방안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방안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제17조제2항에 제3호로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법인이 아닌 민간대북단체는 물론 대북지원사업을 부수적인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폭 넓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기부금은 대개의 경우 서신·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그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함으로써 모집되는데, 모집은 물론 모집된 기부금의 관리·사용 등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엄

격하게 규율되므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대북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기부금이 자의적으로 모집·관리·사용되는 폐단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

2. 對北支援物品 買入·供給과 관련한 節稅方案

(1) 節稅方案으로서 附加價値稅 零稅率制度의 活用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면, 민간대북단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지원물품의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종래에는 대북지원창구가 대한적십자사로 단일화되어 있어 여타의 민간대북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할 뿐이고 대한적십자사가 지원물품을 매입하여 북한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대한적십자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대북단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복수의 대북독자지원창구가 인정되어 민간대북단체가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모집된 기부금으로 직접 지원물품을 매입하여 북한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급가액의 10% 상당)의 환급은 민간대북단체에게 있어서 그 실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2) 對北支援物品의 買入·供給에 대한 現行租稅法上의 取扱

현재 민간대북단체는 지원물품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만을 적용받고 있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영세율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考慮事項

민간대북단체 중 영세율제도를 활용하는 단체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간대북단체의 영세율 적용신청은 현행법의 해석상 가능하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국세청의 관련예규(1998.5.1 부가 46015-897 등)도 나와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구태여 질차가 복잡한 개정작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참고로 입법조치를 취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각호 중에 '민간대북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추가하는 방안(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26조 참조)이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민간대북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3항 참조)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4) 改善方案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 민간대북단체가 북한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지원물품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세의 포기·영세율의 적용신청·매입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관계법령>을 참조할 것).

〈關係法令〉

1. 對北支援事業關聯 寄附金 關係法令 (1999.7 현재)

○ 法人稅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

〈關係法令〉

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法人稅法施行令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 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②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關係法令〉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法人稅法施行規則

제15조의4 (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 단서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 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10조제4항에 규정하는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89·3·6, 91·2·28, 94·3·12, 95·3·30, 97·3·29>

[본조신설 75·3·3]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98·8·22>

1.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2.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更生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關係法令〉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
 24.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2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한 에너지관리공단
 2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27.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28.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9.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
 30.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2.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3. 제1호 내지 제32호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②영 제36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98·3·21, 98·8·22>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11. 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및 연수원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전문개정 97·3·29]

○ 所得稅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關係法令〉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연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28>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98·12·28>

제52조 (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7·12·13, 98·12·28>

1.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

협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關係法令〉

-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6.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96·12·30 법5191〉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영유아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97·12·13〉

○ 所得稅法施行令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④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전문개정 96·12·31]

〈關係法令〉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②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13조 (특별공제) ①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1, 98·4·1>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한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②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③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 所得稅法施行規則

제43조 (지정기부금의 계산)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지정기부금·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62조의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5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58조 (특별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8·3·21, 98·8·11>

1. 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것
2.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학생별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이 경우 당해 납세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그 제출전 1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지 및 그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제1항제2호 또는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 보험증권의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의 사본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각각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6·3·30>

2. 對北支援事業關聯 附加價值稅 零稅率 關係法令 (1999.7 현재)

○ 附加價值稅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77·12·19>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80·12·13, 88·12·26, 93·12·31, 98·12·28>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하인 것
 -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조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 지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서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80·12·13, 88·12·26, 98·12·28>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關係法令〉

5.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는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휴대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건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 영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13의2.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7·12·16〉
- ⑤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5·12·29>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80·12·13, 93·12·31, 94·12·22, 98·12·28>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 <93·12·31>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2·31, 94·12·22, 95·12·29>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關係法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4·12·22, 95·12·29>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98·12·28>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⑥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78·12·5, 93·12·31>

⑦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⑧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93·12·31, 94·12·22>

제24조 (환급)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附加價値稅法施行令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關係法令〉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경과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 적용신고서와 함께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전문개정 83·7·1]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18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개정 93·12·31, 94·12·31, 96·7·1>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78·12·30, 93·12·31, 94·12·3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③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77·6·29, 77·9·12, 77·12·30, 78·12·30, 80·9·27, 82·12·31, 83·7·1, 84·10·5, 84·12·31 대령11580, 85·12·31, 88·6·9, 90·12·31, 92·12·31, 93·12·31, 94·12·31, 95·12·30, 96·12·31, 98·12·31 대령15973>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 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 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4.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 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5.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 증명서
6.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로 한다.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다만, 일반여행업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한다.

〈關係法令〉

7의2. 삭제 <94·12·31>

8. 제2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9. 제26조제1항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8조의 경우에는 외
교관면세판매 기록표

10. 제2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환입금증
명서 또는 당해 시행청이 발급하는 차관사업증명서

11. 제2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기록표

12. 제2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의2제2
항에서 규정하는 외화면세판매물품인도보고서와 외화입금증명서. 다
만,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당해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93·
12·31, 94·12·31>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⑤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
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
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93·12·31, 98·12·31 대령15973>

⑥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⑦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
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
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

가치세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7·12·30, 93·12·31, 94·12·31>

⑧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와 매출·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신설 77·6·29, 94·12·31>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78·12·30>

⑩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8·12·31 대령15973>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77·12·30, 78·12·30, 94·12·31, 96·12·3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현황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78·12·30>

〈關係法令〉

③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 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77·12·30, 80·12·31, 93·12·31, 94·12·31, 95·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78·12·30〉

제73조 (조기환급)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제2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0·5〉

1.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에정일자·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78·12·30, 81·12·31, 93·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올등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올등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78·12·30, 84·10·5, 93·12·31, 94·12·3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⑤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78·12·30, 93·12·31, 94·12·31>

⑥삭제 <84·10·5>

○ 附加價值稅法施行規則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영 제64조제2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93·5·27, 95·3·31>

②삭제 <93·5·27>

③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25호서식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77·7·1, 93·5·27>

④영 제6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올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99·4·8>

○ 租稅特例制限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 이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 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97·12·13, 98·9·16>

〈關係法令〉

1. 외국환관리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施行令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93·12·31>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31, 98·10·23, 98·12·31>

현안분석 99-02

對北支援事業에 대한 稅制支援方案

1999년 12월 24일 印刷

1999년 12월 31일 發行

發行人 徐承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전화 : (579)0090, 0308

등록번호 : 1981.8.11. 제1-a0190호

값 5,500 원

- 本院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ISBN 89-8323-112-2 93360

